

고성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

의안번호	970
------	-----

제출년월일: 2006. 5. 26.

제 출 자: 기획감사실장

1. 제정이유

- 지방재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2006년부터 전면 개정 시행된 「지방재정법」 제60조에 의거 지방재정공시제도가 운영됨에 따라, 현행 「고성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」를 폐지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설치토록 위임된 「고성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」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 (안 제 2 조)
- 나.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(안 제 3조)
- 다. 고성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4조)
- 라.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운영 (안 제5조)
- 마.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거 수당 등 경비 지급.(안 제8조)
- 바. 기존의 「고성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」는 폐지

3. 참고사항

- 가. 입법예고
 - 고성군 공고 제2006-316호
 - 의견 및 제출사항 없음
 - 나. 관계법규
 - 지방재정법 제60조(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등)
 -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(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) 내지 제72조
- ※ 행정자치부 및 경남도 표준안 시달

4. 본문 : 덧붙임과 같음.

고성군 조례 제 호

고성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고성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원회 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,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.

②위원회는 학계, 공무원, 관계 민간인전문가, 시민단체 대표 등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.

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제3조(위원회 운영)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.

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「지방재정법」 제60조 및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68조 및 제69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, 시기 등에 관한 사항
2.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

제4조(위원회 통합운영)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고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5조(회의) ①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.

②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
③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제6조(의견의 청취)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7조(간사) ①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예산담당주사로 한다.

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
제8조(수당 등)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고성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다른 조례의 폐지) 「고성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」는 이를 폐지한다.